

2026년 울산해양경찰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6-03호

울산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분야, 총 2명)

지원코드	채용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기관(근무지)
인턴A	행정	2명	울산해양경찰서(울산 남구)

가. 근무조건

-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6개월 * 근무시작일(예정): '26. 6. 15.(월)
- (보 수) 월 2,156,880원[월급여(1,996,880원) + 정액급식비(160,000원)]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는 보수에서 공제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

나. 주요 업무 내용

채용 분야	근무예정기관	주요 업무
행정	울산해양경찰서	○ 기획, 홍보 업무 지원 ○ 전산, 통계, 데이터 정보 등 관리 지원 ○ 회의, 행사, 기록물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

※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

※ 근무 예정 세부부서는 부서 수요, 합격자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

2. 응시 자격 및 제한 사유

가. 응시자격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이상~34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 '26. 6. 10.(수)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 제한 사유(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가능)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2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 ※ 단, '23~'24년에 2회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3 회차 참여기회 부여
- ※ 참여횟수 및 근무기간 확인을 위해 기존 참여 이력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누락·허위 작성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 고용보험 이력 중 '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8조(채용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양경찰청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칙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
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1항)】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다. 가산요건 : 적극적 서류전형 진행 시 적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사회형평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3%를 가산

【사회형평 대상자(장애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2026.5.29.)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원서접수일에 제출 필요

- 가점은 원서접수일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응할 수는 있으나 가점을 받을 수 없음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한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합격자로 결정(적극적 서류전형 진행)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

- 적극적 서류전형(10배수 초과한 경우)

계	평가점수	
	지원서	가점
지원서(100점) + 가점(3점)	100점	3점

- **청년인턴 지원서** :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성실성과 참여의지 [**총 100점**]

※ 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출생지·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10점 감점

- **가점** : '사회형평 대상자'의 경우 만점(100점)의 3% [**총 3점**]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마다 '상·중·하'로 평정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발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

- ① 참여의지 및 진로연계성, ②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③ 정책제안의 참신성·실현가능성,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⑤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다. 최종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2명(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順))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26.5.18.(월) 09:00 ~ '26.5.29.(금) 18:00	■ 울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 (www.kcg.go.kr/ulsancgs/main.do)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 나라일터(www.gojobs.go.kr)
원서접수	'26.5.18.(월) 09:00 ~ '26.5.29.(금) 18:00	■ 청년인재DB(www.2030db.go.kr)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6.6.2.(금)	■ 울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 (www.kcg.go.kr/ulsancgs/main.do)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면접시험	'26.6.10.(수) (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6.6.11.(목)	■ 울산해양경찰서 홈페이지 (www.kcg.go.kr/ulsancgs/main.do)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근무시작일	'26.6.15.(월)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위원의 불가피한 사정, 서류 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5. 18.(월) 09:00 ~ 2026. 5. 29.(금) 18:00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 내 '2026년 울산해양경찰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접수
- ※ 신청 전 청년인재DB(www.2030db.go.kr)에 가입 필요

6.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 '2026년 울산해양경찰서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첨부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 첨부 제출서류 파일명은 "청년인턴_성명.pdf"로 기재

제출서류	비 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1호
2.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2호
3. 청년인턴 지원서 1부	· 별지서식 3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4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1부	· 별지서식 5호
6.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등본이 아님에 유의
7.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6호
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7호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별지서식 8호
10. 정책제안서	· 별지서식 9호
1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 별첨 발급 방법 참조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1. 가점 증명서	·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 자필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자필서명하여 제출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

7.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052-230-2416, 2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 채용담당자 기재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목 록	제출	미제출
< 공통사항(필수 제출서류) >		
1. 청년인턴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2. 응시원서 1부	☐	☐
3. 청년인턴 지원서 1부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1부.	☐	☐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1부	☐	☐
7.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	☐
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
10. 정책제안서	☐	☐
1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	☐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1. 가점 관련 증명서	☐	☐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인 또는 서명)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채용분야 : 행정
-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⑥ 가점요건 : 해당란에 ✓ 표시
- ⑦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 '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상실일 기준으로 산정)

청년인턴 지원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
-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

◎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

-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출신학교, 자격증, 시험(어학 등)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

◎ 문제 해결 경험

- 일상생활, 학교, 아르바이트,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
-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

◎ 소통 및 협업 능력

-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

◎ 기대하는 점 및 각오

- 인턴ships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

○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
- 학력, 자격증,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
-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해양경찰서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법무부용, 국적확인)

본인은 공직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으로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본 인 (*는 필수 입력 사항임)

- | | | | |
|------------|------------|----------|-------|
| ▪ 성 명 * | _____ (서명) | ▪ 생년월일 * | _____ |
| ▪ 자택전화 * | _____ | ▪ 휴대전화 * | _____ |
| ▪ e-mail * | _____ | | |
| ▪ 직 장 | _____ | ▪ 직 위 | _____ |
| ▪ 직장전화 | _____ | ▪ 연락팩스 | _____ |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별지서식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확인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응시관서	생년월일	성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울산해양경찰서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u>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u>부패행위</u>’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u>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정책제안서

지원분야		성명		연락처		e-mail	
------	--	----	--	-----	--	--------	--

제 목	청년이 보는 00 정책 ※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사업·제도(예: 복지, 노동, 산업, 금융 등)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
제안 배경 및 문제점(현황)	
개선안 또는 정책대안	
예상 효과	

○ 정책제안서 작성요령

-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글자크기 : 11, 글자체 : 맑은고딕, 줄간격 : 120%)
-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
- *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별첨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

-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접속
(<https://total.comwel.or.kr>)



- 2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①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

☒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산재근로자
 ☐ 대리인간이대차급금/임사청구/구상금협의조절/최초요양급여신청·유족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간편인증 사업자: 카카오, 통신사PKS, 한국정보안전상성PK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토스,뱅크샐러드, 하나은행, 농협, 드림인증
-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라를 바꾸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개인 >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털서비스는 모바일 환경(모바일 웹 앱)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개인**

[일반근로자] 박정연님 민원접수/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

자주 찾는 서비스

개별
 사업장 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보 정보조회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심사청구서 작성

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

공지사항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 원 월 환산액 2,096,270 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휴 8시간 포함)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 원 월 환산액 2,096,270 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휴 8시간 포함)

④ 보험구분 중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중 '상용' 선택 → 조회

⑤ 직종포함여부 '예' 선택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인쇄)' 신청 선택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Home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

+ 마이메뉴 추가

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학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구분 ☐ 산재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 일용

조회

이력내역서 발급

직종포함여부 ☒ 예 ☐ 아니오

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차적관리 상세이력]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

신청 여말전송

신청 여말전송

신청 여말전송

☐ 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2025-01	55	발급일자	2025년 01월 03일	접수번호 0000-2025-7 J
신청인	성명	박	생년월일	년 10월 30일	
조회기간	전체 (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				
일련번호	직종명(코드)	사업장 명칭	취득일/전근일	상실일	비고
1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025)	국무조정실	2024-09-02		근로자
2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국민소통-민원/조회-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